

2025 세법개론 추록

이철재·정우승·유은중 공저
리즈북스 | 2025년 6월 10일 발행

- 이 추록은 『2025 세법개론』 제1판 1쇄에 적용되는 수정사항입니다.
- 이 추록은 출간 이후 개정된 세법 내용, 행정해석 및 그 밖의 보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

1. 정오사항 및 보완사항

| 면 | 행 | 종전의 내용 | 고칠 내용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법인-215 | 상 9~10 | ④ 익금산입·손금불산입 23,000,000 익금산입·손금불산입 30,000,000 | 익금산입·손금불산입 23,000,000 ④ 익금산입·손금불산입 30,000,000 |
| 법인-312 | 상 12 | [상황 1] 상각부인액이 5,000,000원이 | [상황 1] 상각부인액이 2,000,000원이 |
| 법인-313 | 하 9 | [물음] | [물음] 다음 상황별로 세무조정을 행하십시오. |
| 법인-423 | 하 10 | 서적출판업 | 일반서적출판업 |
| 소득-135 | 하 9 | 한소영 씨의 2024년 급여 | 한소영 씨의 2025년 급여 |
| 소득-174 | 상 1 | 거주자 甲의 2024년 귀속 | 거주자 甲의 2025년 귀속 |
| 소득-181 | 하 4 | 단위투표당 환급금이 2,010,000원 |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,010,000원 |
| 소득-182 | 하 5~6 | ② 퇴직연금계좌 인출액이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면 분리과세대상 연금이므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| ② 연금수령하는 이연퇴직소득은 분리과세대상 연금이므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|
| 소득-284 | 상 3 | 근로소득 산출세액은 3,000,000원임 | 근로소득 산출세액은 3,400,000원임 |
| 상증-46 | 하 3 | 증여추정 규정 | 증여의제 규정 |
| | 하 2 | 증여추정규정 | 증여의제규정 |
| | 하 2 | ①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| 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|

❑ p. 소득-97 하 1행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세요.

*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,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. → 초월산입·말월불산입

❑ p. 소득-287 하 5~9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.

| 구분 | 의료비 지출액 | 차감액 |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| 세액공제율 | 의료비세액 공제액 |
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일반의료비 | - | - | - | 15% | - |
| 특정의료비 | 2,500,000*1 | 1,800,000 | 700,000 | 15% | 105,000 |
| 계 | | 1,800,000*2 | | | 105,000 |

*1 500,000(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, 1인당 50만원 한도) + 2,000,000(장애인보장구) = 2,500,000

2. 행정해석 반영 사항

❑ p. 소득-105 상 10~11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.

*1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**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에서부터 순차로 차감**한다. 간주임대료 계산시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로서 보증금 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는 **임대기간 구간별**로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한다(서면 - 2016 - 법령해석소득 - 2990, 2017. 4. 18.).

❑ p. 소득-105 상 18~26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.

3주택을 소유한 갑이 2025년에 주택 2채를 다음과 같이 임대한 경우 추계결정시 2025년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면 얼마인가? 단,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.1%이다.

| 구분 | 임대보증금 | 임대기간 |
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A주택 | 2억원 | 2025. 1. 1. ~ 2026. 12. 31. |
| B주택 | 3억원 | 2025. 8. 8. ~ 2027. 8. 7. |

• 해설 •

① 3억원 차감 내역

보증금합계액이 2025. 1. 1. ~ 2025. 8. 7.은 2억원, 2025. 8. 8. ~ 2025. 12. 31.은 5억원이므로 임대기간 구간별로 보증금 등의 적수가 큰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.

| 구분 | 1. 1. ~ 8. 7. | 8. 8. ~ 12. 31. |
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A주택 | 2억원 - 2억원 | 2억원 |
| B주택 | - | 3억원 - 3억원 |

② 간주임대료(A주택) : 2억원 × 146일(8. 8.~12. 31.) × 60% × 1/365 × 3.1% = 1,488,000

▣ p. 소득-107 하 1~12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.

(2) 주택

① 3억원 차감 내역

보증금합계액이 2025. 1. 1.~2025. 10. 19.은 270,000,000원, 2025. 10. 20.~2025. 12. 31.은 6억원이므로 임대기간 구간별로 보증금 등의 적수가 큰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.

| 구분 | 2025. 1. 1.~2025. 10. 19. | 2025. 10. 20.~2025. 12. 31.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아파트 A | 270,000,000 - 270,000,000 | 270,000,000 |
| 아파트 B | - | 330,000,000 - 300,000,000 |

② 간주임대료 : 111,600

(아파트 A) : $270,000,000 \times 73\text{일}(10. 20. \sim 12. 31.) \times 60\% \times 1/365 \times 3.1\% - 5,000,000^{*1,2} = 0^{*3}$

(아파트 B) : $30,000,000 \times 73\text{일}(10. 20. \sim 12. 31.) \times 60\% \times 1/365 \times 3.1\% = 111,600$

(3) 간주임대료 합계 : $4,800,000 + 111,600 = 4,911,600$

*1 유가증권처분이익은 금융수익으로 보지 않으므로 정기에금이자만 차감한다.

*2 둘 이상의 부동산임대사업장이 있는 경우 한 사업장의 보증금 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은 그 사업장에만 적용한다.

*3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(0)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(소집 25-33-4 ③).